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12호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1일

강릉시의회의장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한부모가족법」에 따라 강릉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적용범위 및 책무(안 제2조 및 제3조)
- 다. 지원계획 수립·시행 규정(안 제4조)
- 라.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업 등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 마. 지원의 중지 및 환수(안 제7조 및 제8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회장 (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번호: 033-640-4077
- 팩스번호: 033-640-4070
- 전자우편(이메일): hellen8762@korea.kr

붙임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1부. 끝.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강릉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강릉시 한부모가족(이하 “한부모가족”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2.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환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규명: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